

제 8 장

재외국민 지원

제 1 절 새 교포정책 시행

1. 새 교포정책 수립 취지

문민정부의 수립과 냉전종식으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압도적 우위가 확보됨에 따라 통일한국을 시야에 둔 미래지향적인 새 교포정책 수립이 긴요하게 되어,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무부는 1993년 8월 유관부처 간 교포정책협의체인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새 시대의 조류에 맞는 “새 교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1994년 12월 31일 현재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는 총 523만여명으로 이중 대략 미국에 180만명, 일본에 70만명, 중국에 194만명, 독립 국가연합지역에 46만명, 기타지역에 33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별 교포사회는 역사적 형성과정과 지역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는 교포정책을 이들 지역별 교포社会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2. 새 교포정책의 기본방향

가. 교포의 거주국 사회내 정착 지원

새 교포정책은 교포들이 본래의 이주목적대로 거주국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교포가 본국에 정신적 뿌리를 두면서도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본국과 거주국간의 교류증진을 위한 중요한 교량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교포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뿐 아니라 정부의 “세계화” 노력에도 부응한다고 할 수 있다.

1) 재미교포 지원

정부는 1992년 LA 폭동사건을 계기로 재미교포의 현지정착을 돋고자 한·혹간 이해증진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우리교포 및 문화에 대한 혹인들의 인식을 높이면서 친한화를 유도코자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혹인지도자와 혹인학생들을 방한 초청하고 있다.

혹인지도자의 경우 1993년에 5명, 1994년에 4명을 초청하였고, 1994년 7월에는 혹인청년학생 51명을 초청하여 4주간 한국문화 및 전통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LA 폭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혹인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원금 1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했으며, 공관을 통해서 한·혹 친선위원회 결성, 한·혹 문화축제, 한·혹 관계개선을 위한 Workshop, 한·혹 종교지도자 회의등의 개최를 지원하였다.

또한 재미교포가 미국내 현지사회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4년 1월 LA 지진 피해복구지원과 함께 혹인 거주지에 위치하고 있는 교포상점을 범죄로 부터 보호키 위해 치안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교포들간의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했으며, 장기적으로 유능한 교포의 정치입문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2) 재일교포 지원

그간 정부와 재일민단의 노력으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와 지문날인 문제는 일단락 되었으나 정부는 재일교포의 일본내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일본내 원호법, 은급법 등 보상관련 제법률의 국적조항 철폐 및 재일교포의 지방참정권 획득운동 등의 측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간 재일민단이 추진한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을 정부에서도 측면지원 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둬 1994년 12월 31일 현재 189개 지방의회가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도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가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 정부의 재일교포에 대한 참정권 부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3)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거주 교포 지원

본국과 단절되어 살아온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거주 교포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현지주민과의 화합행사를 지원코자 1992년 10월이후 블라디보스톡, 상해, 청도에 총영사관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에 대사관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관을 계속 증설하는 한편 이들 공관을 통해 교포들이 거주국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나. 민족 동질성 및 본국과의 유대 강화

새 교포정책은 교포들이 거주국 법제도하에서 한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본국과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세계 우리민족청년대회, 세계 한민족대표자회의, 세계 한인상공인대회, 세계 한민족축전 등과 같은 각종 교포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본국과 현지사회에 공헌한 교포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민족동질성 함양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 문화원, 교육원의 설치·운영

과 함께 공관을 통해서 한글학교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는 4개 전일제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교포들의 민족동질성 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모국방문 기회 확대와 한글교육 및 우리전통문화 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할린교포 1세의 모국방문과 교포대학생, 언론인, 민족교육 담당자의 본국연수를 실시하고 한글 및 한국학 교재와 홍보자료를 교포단체, 한글학교,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다. 교포사회의 대동단합 지원

새 교포정책은 교포사회가 정치, 이념적 대결을 지양하고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하에 대동단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이라는 헌법정신 및 교포정책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고 한인회 등 주요 교포단체의 활동지원을 통해 교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약 800만불을 재외공관을 통해 교부하고 있다.

라. 교포사회의 자조노력 지원과 교포행정 창구 일원화

교포사회에 대한 지원은 자조노력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새 교포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에의 지원은 강화하되 경상경비 · 소모성 경비의 지원은 지양하고 한글교육을 포함한 민족교육, 전통문화행사 및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교포들이 본국요로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교포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면을 시정하여 질서있는 교포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교포행정의 창구를 현지사정에 밝은 해외공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제 2 절 재외국민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개선

정부는 교포들의 활발한 모국왕래가 모국과의 유대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교포들의 모국방문 또는 모국에서의 활동시 겪게 되는 제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그간 법무부, 재무부, 교육부, 건설부 등 교포업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여러면에서 개선조치를 취해 왔으며, 그중 1993년이후 취한 정부의 조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93년 4월 1일부터 국내반입 외화한도액을 5천불에서 1만불로 상향 조정했다.
- 1993년 10월 1일부터 해외이주비 반출기한을 1년에서 2년이내로 연장 했다.
- 1994년 1월 1일부터 주일 각공관 여권업무의 민단경유 관행을 개선, 공관에의 여권발급 직접 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 1994년 4월 8일부터 외국국적 취득 교포의 토지 양도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 1994년 7월 1일부터 외국국적 소지 교포에 대해서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방문 · 동거 목적 사증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국적 취득 교포 1세에 대한 국내토지 보유 허용

문제, 해외이주자의 국내재산 반출 허용문제 및 중국교포 영주귀국 허가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교포의 편의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간 교포사회 일각에서 이중국적 허용 및 교민청 설치 요구가 있어 왔으나, 이같은 문제는 교포들이 본국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불편사항때문에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는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고 국내거주자와의 권리·의무상의 형평성 및 국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교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과 제도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